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4.21, 2012.3.5, 2026.7.23>

제2조 (적용범위)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구성)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7.23>
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 <개정 2010.4.21, 2017.2.22>
④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0.4.21>
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간사가 겸임한다. <개정 2001.8.14, 개정 2010.4.21>
⑥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기능)
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01.8.14>
①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, 심사, 선정 <개정 2026.7.23>
② <삭제 2010.3.26>
1. <삭제 2010.3.26>
2. <삭제 2010.3.26>
3. <삭제 2010.3.26>
③ <삭제 2012.3.5>
④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7.23>
가.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상법 등 국내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나. 다음의 Global 기준 독립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

1. 독립이사 업무에 따른 보수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독립이사 및 가족은 최근 3년 내 연간 회사/모회사/자회사로부터 $60,000 초과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2. 독립이사는 최근 3년 내 회사/모회사/자회사가 임원으로 고용한 개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
3. 독립이사는 최근 1년 내 회사 감사기관의 파트너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함
4. 독립이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독립성 기타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, 회사와 다른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[신설 2022.3.30]

⑤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성별, 인종, 종교, 민족, 국적, 연령, 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후보를 심사, 선정, 추천한다. [신설 2022.3.30] <개정 2026.7.23>

⑥ 위원회는 성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 [신설 2022.3.30] <개정 2026.7.23>

제4조의2 (독립이사후보 추천 절차)

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이사후보 추천 자문단을 구성하여 독립이사후보를 추천 받을 수 있다. [신설 2021.5.7] <개정 2026.7.23>

제5조 (회의)

① 위원회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한다. [신설 2001.8.14]

② 정기 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일 또는 그 이전 7일 내에 개최한다. [신설 2001.8.14] <개정 2010.4.21>

③ 임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 <개정 2001.8.14>

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규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직후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한다. <개정 2010.4.21>

제6조 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 (자료요청 등)

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 (2000년 5월 18일 시행)

이 규정은 200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년 8월 14일 시행)

이 규정은 2001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년 4월 21일 시행)

이 규정은 201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년 3월 5일 시행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년 2월 22일 시행)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년 5월 7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년 3월 30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년 7월 23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